

## 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】

본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 관리소1호터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.

###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- 내,외부 시설물안전 및 화재 예방
- 정수부스 요금징수업무 및 차로별 미납 및 과태료부과 증빙용
- 차선 및 요금징수원 안전유무확인

###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	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40대	건물 내부 및 도로별 차선 및 각 정수부스

### 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	이름	직위	소속	연락처
관리책임자	안은	소장	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 관리소	02-2290-6460
접근권한자	김호영	과장	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남산1호 요금소	02-2290-6317
	전정희	대리		

###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 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24시간	촬영일로부터 60일	장비실 (남산1호 요금소)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NVR에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데이터 영구삭제 방법으로 합니다.

※ 시설물 안전 및 차로별 미납 및 과태료부과 징수를 위해서 60일까지 저장 후 삭제

### 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(해당사항없음)

### 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 확인방법 : 관련기관(경찰서 또는 유관기관등)에서 해당영상정보 열람을 위해 공문 또는 문서 (개인정보청구서) 접수 후 관리책임자 확인 및 접근권한자 감독하의 열람 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.

※ 개인열람은 불가하며 요청을 원할 경우 관련기관(경찰서 또는 유관기관)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.

- 확인장소 :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남산1호 요금소

## **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**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## **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**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## **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**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6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<b>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</b>					처리기한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전화번호		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		
	주소		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전화번호		
	생년월일				
	주소				
청구내용 (구체적 기재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9.01.01 14:00 ~ 2019.01.01 20:00)		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종각역 1번 출구 계단 CCTV)			
	청구 목적 및 사유				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					
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		
청구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					
서울시설공단 귀하					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**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**

